

04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물법제에 대한 연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변호사

1. 서론

4차산업혁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최고의 자원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 콩고 민주공화국은 불행하게도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인해 그동안 광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국내 분쟁이 가라앉으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자원보유국이 되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2014년 기준 세계 코발트 생산의 51%, 탄탈륨 17%, 다이아몬드 13%, 구리 6%, 정제 코발트 약 4%, 주석 2%의 매장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코발트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47%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 부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으로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에서 필수적인 코발트의 세계 최고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으로서는 코발트 생산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국가의 몫을 높이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1월 24일, 콩고 민주공화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기존 2002년 광업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광업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3월 10일, 카빌라 대통령은 2018년 광업법(안)에 서명했다. 광물 가격의 상승 등 우호적인 상황에서 자원보유국이 보이는 전형적 행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2002년 광업법에 따라 개발회사에

주어진 10년 동안의 법적·재무적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의 폐지, 로열티 및 조세의 변화를 통한 국가 몫 증대, 정부의 무상지분 확대, 전략광물의 지정, 지방정부 권한강화, 환경책임 강화 등이다.

아래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전반적인 자원 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 2002년 광업법과 2018년 개정 광업법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II.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 산업

1. 콩고 민주공화국의 지리, 경제, 정치

가. 콩고의 독립과 정치적 혼돈

1908년에 벨기에의 식민지화되었던 콩고 민주공화국은 1960년에서야 독립국이 되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DR 콩고, DRC, 콩고 킨샤사(Kinshasa),¹⁾ DROC, RDC²⁾ 등으로도 불리며, 콩고 공화국(Republic of Congo),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우간다, 르완다, 브루나이, 탄자니아, 앙골라 등의 국가와 접경하고 있다.³⁾

콩고 민주공화국은 2,344,858km²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며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회원국 중 가장 큰 나라이다. 그 면적은 미국의 1/4, 유럽 연합의 2/3 정도로,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83백만명이다.⁴⁾

콩고 민주공화국은 비록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오랜 도안 정치·사회적으로 불안

1) 인구 약 890만 명의 킨샤사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콩고 킨샤사로 불린다.

2) 불어로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이기 때문에 그 앞자를 줄여서 'RDC'라 한다.

3) KOTRA, 콩고 민주공화국 - 국가·지역정보, 2018년 8월 10일,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2>>.

4) CIA, the World Factbook,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September 10, 2018) at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g.html>>.

정했다. 1965년 11월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모부투(Joseph Col. MOBUTU)는⁵⁾ 잔인한 무력과 여러 번의 부정선거를 통해 1997년까지 32년간 권력을 유지했으며, 1970년 국가의 명칭도 자이르(Zaire)로 개명했다. 르완다와 부룬디에서의 내전으로 1994년 대량 난민이 유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촉발된 민족 투쟁과 내전이 발발했다. 그러나 1997년 5월, 르완다와 우간다가 후원한 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의 반란으로 인해 모부투 정권은 전복되었다.⁶⁾ 권력을 장악한 카빌라는 국명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바꿨지만, 1998년 8월 르완다와 우간다가 후원한 두 번째 봉기로 자신의 정권 또한 도전을 받게 된다.⁷⁾ 그리고 앙골라, 차드, 나미비아, 수단, 짐바브웨 군대가 카빌라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다.

2001년 1월 카빌라가 암살당하자 그의 아들인 요셉 카빌라(Joseph KABILA)가 국가 원수로 임명되었다. 2002년 10월, 요셉 카빌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동부지방을 점령하고 있던 르완다 군대의 철수 협상에 성공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 프리토리아 협정을 통해 나머지 당사국들과의 전쟁 또한 종식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003년 7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는 성공적인 헌법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2006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⁸⁾

2009년, 동부의 키부지역에서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투티족(Tutsi) 반군단체인 국민방위민족회의(CNDP : National Congress for the Defense of the People)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민방위민족회의를 콩고군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2009년 3월 23일 체결된 평화협정에서 명칭이 착안된 M23이라는 무장단체가 2012년 또다시 결성되었다. 2013년 말, 콩고 민주공화국과 유엔의 합동 공격으로 M23이 우간다와 르완다로 후퇴하기 전까지 M23은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⁹⁾

2011년 11월에 시행된 선거에서, 요셉 카빌라는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으나, 콩고 민주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 2016년 1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5) 'Mobutu Sese Seko Kuku Ngbendu Wa Za Banga'이 공식적인 이름이다.

6) CIA, above n 4.

7) Ibid.

8) Ibid.

9) Ibid.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2016년의 선거를 2018년 12월 23일로 연기한 상황이다.¹⁰⁾

나.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

(1) 광업 현황

콩고 민주공화국은 코발트, 구리, 다이아몬드, 탄탈륨, 주석 및 금 등 광물자원에서 아프리카 최고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내정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호수(Great Lakes)¹¹⁾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자원개발 회사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광물개발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2014년 세계 코발트 생산의 51%, 탄탈륨 17%, 다이아몬드 13%, 구리 6%, 정제 코발트 약 4%, 주석 2%의 자원보유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코발트의 경우 세계 전체 매장량의 47%에 이른다.¹²⁾

2013년 기준, 광업 및 광물 가공 분야는 콩고 민주공화국 국내총생산의 20.9%와 제조 부문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 구리 광업만으로도 국내총생산의 13.5%에 이른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재 광물별 매장량 추정은 다음과 같다.

〈 콩고 민주공화국 광물별 매장량 추정 〉

광종 ¹⁴⁾	매장량(톤)
구리	75,000,000
리튬	31,000,000
리튬	30,000,000
망간	7,000,000

10) 한겨레, 콩고 대선, 한국 기업 터치시스템 도입으로 혼란 우려, 2018년 8월 16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896.html#csidxa9d62eb7a3fab1baa31354ec4e5e38a>>.

11) 아프리카 대호수는 아프리카 지구대 주변에 위치한 호수들을 말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 투르카나 호, 키오가 호, 앨버트 호, 에드워드 호, 키부 호, 탕가니카 호, 므웨루 호, 루과 호, 말라위 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Thomas R. Yager, 'The Mineral Industry of Congo (Kinshasa)', 2014 Minerals Yearbook (USGS), 2.

13) Ibid.

14) 외교부, 2018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8년 1월, 660면에서 재인용.

광종 ¹⁴⁾	매장량(톤)
아연	7,000,000
코발트	4,500,000
철광석(60)	1,000,000
주석	450,000
금	600
다이아몬드	206,000,000(캐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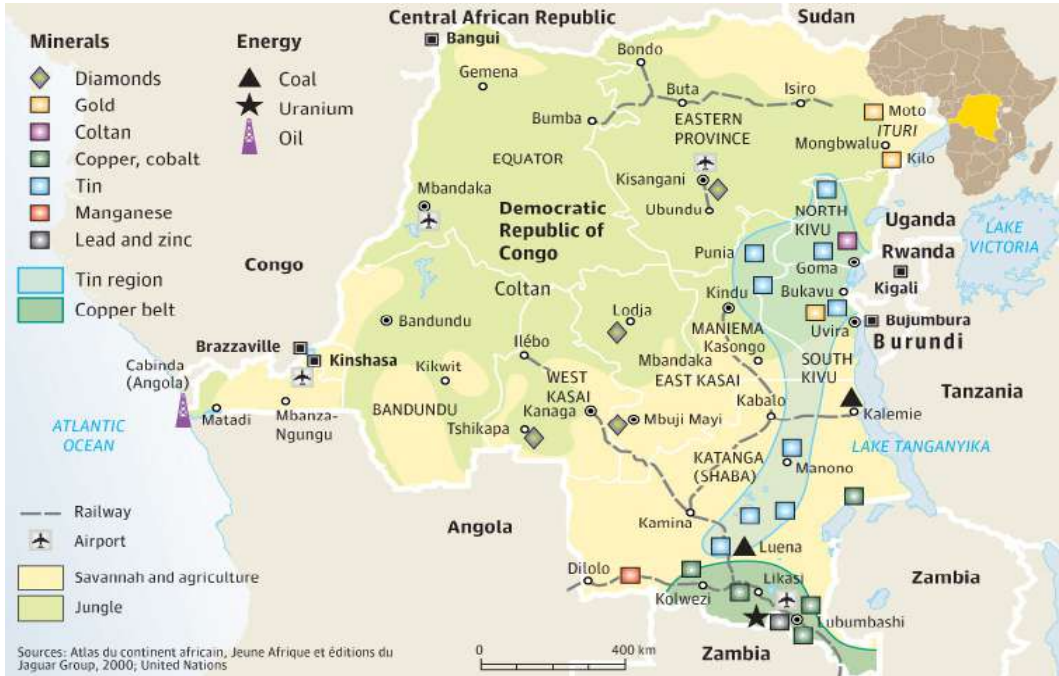
2015년과 2016년 사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주요 광물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콩고 민주공화국 광물별 생산량 〉

광종 ¹⁵⁾	2016년	2015년	생산량 변화
구리(톤)	1,021,634	995,805	2.60%
코발트(톤)	64,007	995,805	-7.70%
금(킬로)	22,648	25,806	-12.20%
다이아몬드(톤)	14,746	17,152	-14.00%
아연(톤)	11,650	14,193	-17.90%
주석(톤)	9,426	8,827	6.80%
콜탄(톤)	869	992	-12.40%
철망간(톤)	112	44	154.50%

15) 외교부, 위 주석.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물분포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물 자원 〉

Le Monde diplomatiqu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s mineral resources (September 19, 2018), at <<https://mondediplo.com/maps/congo2006>>.

콩고 민주공화국의 주요 광물 중 코발트 매장 및 생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발트는 중앙아프리카의 카탕가(Katanga)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앙골라로부터 시작하여 콩고 민주공화국 및 잠비아에 걸쳐 있다. 카탕가 지역에만 세계 코발트 34%, 구리 매장량의 10%가 매장되어 있다.

미국의 Freeport McMoran Copper & Gold Inc.(56%), 캐나다의 Lundin Mining Corp. (24%), Gecamine(20%)의 합작투자회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인 Tenke Fungurume 광산에서의¹⁶⁾ 생산량은 2014년 정련된 구리 202,648톤과 코발트 13,334톤에 이른다.¹⁷⁾

16) European Investment Bank, Tenke Fungurume Mining projec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August 2, 2018), at <<https://web.archive.org/web/20090309160826/http://www.eib.org/projects/news/tenke-fungurume-mining-project,-democratic-republic-of-congo-drc.htm>>.

그 외에도, 스위스 클렌코어가 69%의 지분을 가진 Mutanda Mining SPRL, 스위스 국적의 Katanga Mining Ltd, 영국계 지분이 70%인 Boss Mining SPRL, 중국계 자본의 MMG Ltd와 Ruashi Mining SPRL 등이 주된 코발트 생산회사들이다.¹⁸⁾

(2) 석유, 가스 산업 현황

콩고 민주공화국의 석유 산업은 1960대에 태동하였으나, 197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석유·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콩고 민주공화국 남부 해상 및 인근 육상지역이다. 한편, 서부 및 중앙분지 지역은 내전이 종료된 이후 탐사권이 부여되어 탐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⁹⁾ 콩고 민주공화국의 주요 석유광구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콩고 민주공화국 석유광구 현황 〉

외교부, 2018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8년 1월, 663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1일 평균 20,000에서 2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 합작의 Perenco, 프랑스의 Total, 콩고 민주공화국의 준공영기업인 Cohydro가 대표적인 석유개발회사들이다.²⁰⁾

17) USGS, 2014 Minerals Yearbook Congo(Kinshasa) (July 2017) 13.2.

18) Ibid, USGS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19) 외교부, 위 주석 14), 661면.

20) 외교부, 위 주석,

Ⅲ.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업법제

1. 콩고 민주공화국의 기존 광업법제

가. 콩고 민주공화국 광업법제의 변화

콩고 민주공화국은 1960년 독립 후 1966년, 1967년, 1981년, 그리고 2002년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에서 광업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2002년 광업법에서는 광업활동을 위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에서 광업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개정 목적이었다.²¹⁾

나. 2002년 광업법의 주요 내용

2002년 광업법은 총 17장 44절 3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일반원칙 및 적용범위, 국가의 역할 그리고 관할권의 귀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장 제1절은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념의 정의, 광업법의 적용범위, 광물 소유권의 귀속, 광상의 종류, 개발이 금지되는 구역, 개발이 유보된 광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02년 광업법은 일반원칙에서 광물은 배타적이며 양도불가능하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있다.²²⁾ 또한, 영토 내의 지표·지하·수자원 시스

21) 김대중, 'DR 콩고 광물자원 투자환경 및 법제연구', 2011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논문집, 2011년, 75면.

22) 2002 Mining Code Article 3: Ownership of the mineral substances

The deposits of mineral substances, including artificial deposits, underground water and geothermal deposits on surface or in the sub-soil or in water systems of the National Territory, are the exclusive, inalienable and imprescriptible property of the State.

However, the holders of mining or quarry exploitation rights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products for sale by virtue of their rights.

The ownership of the deposits of mineral substances, including underground water and geothermal deposi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constitute a right which is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rights resulting from the surface area. In no way may a holder of surface rights avail himself of his title to claim any right of ownership whatsoever

템에 속하는 일체의 지하수, 지열, 석유까지 광업법에 따라 국유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광업권자는 해당 권한에 따라 적법한 판매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광물 국유의 원칙에 따라 국가·대통령·주무 장관·지방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광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주도의 광물산업을 진흥하도록 하는 한편, 광업활동에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가가 광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업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²³⁾

대통령은 광업법 관련 시행령의 제정, 광업의 분류, 유보 광물의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을,²⁴⁾ 주무 장관은 광업권의 허가·취소, 담보설정에 대한 승인, 원광의 수출허가, 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²⁵⁾

제2장은 총칙적 조항으로 광업권 취득 자격, 광구의 형태와 위치, 광업권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²⁶⁾

제3장은 광업권에 대한 규정이다. 제3장은 제1절 탐사권,²⁷⁾ 제2절 채취권,²⁸⁾ 제3절 광미(鑛尾) 채취권,²⁹⁾ 제4절 소규모 채취권에³⁰⁾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탐사권은 배타적이며, 양도 가능한 물권으로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으며,³¹⁾ 귀금속을 제외한 모든 광물에 대해 1차 5년간 존속하며, 하나의 채취권이 400km²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50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³²⁾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자격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된다.³³⁾ 탐사권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 관련 조사,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³⁴⁾ 더불어 탐사권자는 탐사의 진행 과정과 현재 상황을 주무 부서(광업부)에 정기

over the deposits of mineral substances, including the underground water and geothermal deposits which his concession may contain.

23) 2002 Mining Code Article 8: The role of the State and its institutions.

24) 2002 Mining Code Article 9: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25) 2002 Mining Code Article 10: The Minister.

26) 2002 Mining Code Title II Common Provisions.

27) 2002 Mining Code Chapter I Mineral Exploration.

28) 2002 Mining Code Chapter II Mining Exploitation.

29) 2002 Mining Code Chapter III Tailing Exploitation.

30) 2002 Mining Code Chapter V Small Scale Exploitation.

31) 2002 Mining Code Article 51 Nature of Exploration License.

32) 2002 Mining Code Article 52 Tern of Validity of the Exploration License.

33) 2002 Mining Code Article 34 Priority for Processing.

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채취권 또한 존속기간 동안 허가된 광물을 배타적 채취할 수 있는 양도가능한 물권으로 법적성질을 규정하고 있다.³⁵⁾ 채취권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나 15년을 한도로 갱신이 가능하다.³⁶⁾ 채취권의 허가 조건으로 채취권자는 채취권자 회사의 완전한 주식 5%를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³⁷⁾

채취권의 신청을 위해서는 탐사허가증 사본, 탐사결과 보고서, 타당성 조사결과(Feasibility study), 채취 관련 기술적 계획, 환경영향평가 결과(Environmental Impact study), 환경관리 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지방정부와의 협의 결과, 지역 공동체의 개발에 대한 기여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³⁸⁾

2002년 광업법 제4장은 비산업적 광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³⁹⁾ 즉, 2002년 광업법은 해당 광구가 산업적 또는 준산업적 규모로 개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인 또는 조합형태의 조직에 의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작업의 의한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금 및 콜탄 광물채굴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산업적 광업 규정을 들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하지만, 수많은 어린이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손으로 광물을 채취하고, 이렇게 채굴된 구리와 코발트를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는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적 차원의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2002년 광업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산업적 광구의 창설과 허가, 생산물의 판매,⁴¹⁾ 중개상인 카드 보유자의 의무,⁴²⁾ 수매업소의 허가신청 철자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통제를 실시했다.

2002년 광업법 제5장은 채석권(Quarry right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⁴³⁾ 2002년 광

34) 2002 Mining Code Article 58 Proof of Minimum Financial Capacity.

35) 2002 Mining Code Article 64 Scope of the Exploitation License, Article 65 Nature of Exploitation License.

36) 2002 Mining Code Article 67 Term of Exploitation License, Article 80 Renewal of the Exploitation License.

37) 2002 Mining Code Article 71 Conditions for Granting the Exploration License d).

38) 2002 Mining Code Article 69 The Preparation of the Application for the Exploitation License.

39) 2002 Mining Code Title IV Artisanal Mining.

40) 김대중, 위 주석 21), 80면.

41) 2002 Mining Code Article 116 Sale of Products Resulting from Artisanal Mining.

42) 2002 Mining Code Article 118 Obligations of Holders of Trader's Cards.

업법에 따르면 채석권은 노천광(Open Pit) 방식의 개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⁴⁾ 채석권 또한 채석 탐사권, 채석 채취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2년 광업법 제6장은 담보권 설정(Securities)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⁴⁵⁾ 광업권 담보로는 저당(Mortgage)과⁴⁶⁾ 판매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질권(Pledges)의 2 종류가 인정되고 있다.⁴⁷⁾

2002년 광업법 제7장은 광업권의 임대와 이전에 대한 장이며,⁴⁸⁾ 제8장은 광업권자 또는 채석권자의 의무에 대한 장이다.⁴⁹⁾ 그리고 제9장은 조세 및 관세,⁵⁰⁾ 제10장은 환전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보증,⁵¹⁾ 제11장은 광업권자와 채석권자의 관계, 해당 권리자들 사이의 관계 및 이들과 토지에 대한 권리자와의 관계,⁵²⁾ 제12장은 행정명령의 미준수와 징계,⁵³⁾ 제13장은 광업법 위반과 징계,⁵⁴⁾ 제14장은 이의신청,⁵⁵⁾ 제15장은 기타 조항, 제16장은 잠정적 조항,⁵⁶⁾ 제17장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최종 조항을⁵⁷⁾ 각 담고 있다.

43) 2002 Mining Code Title V Quarry Rights.

44) 2002 Mining Code Article 1 Definition of Terms. - 중간 생략 -

Quarry: Any deposit of mineral substances classified as quarries suitable for open cast mining and/or any plant for the processing of products relating to such exploitation located within the Perimeter of the quarry to transform them into products for sale, including installations, equipment and fixtures used in the exploitation process. - 이하 생략 -

45) 2002 Mining Code Title VI Securities.

46) 2002 Mining Code Title VI Securities. Chapter I Mortgages.

47) 2002 Mining Code Article 176 Pledges of Marketable Products.

48) 2002 Mining Code Title VII Leases and Transfers.

49) 2002 Mining Code Title VIII Obligations of the Holders of Mining or Quarry Rights.

50) 2002 Mining Code Title IX Tax and Customs Legal Regime for the Mines.

51) 2002 Mining Code Title X Foreign Exchange Regime and Stste Guarantee.

52) 2002 Mining Code Title XI Relations between the Holders of Mining Rights and/or Quarry Rights themselves and with the Occupants of the Land.

53) 2002 Mining Code Title XII Failure to Comply with Administrative Obligations and Penalties.

54) 2002 Mining Code Title XIII Infrations and Penalties.

55) 2002 Mining Code Title XIV Appeals.

56) 2002 Mining Code Title XV Transitory Provisions.

57) 2002 Mining Code Title XVII Repeal and Final Provisions.

2. 콩고 민주공화국의 2018년 새로운 광업법

가. 2018년 광업법의 개정 경위

2018년 1월 24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원은 만장일치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천연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고 전국의 기존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보증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⁵⁸⁾ 특히, 2018년 광업법은 높은 로열티와 "초과수익(Super Profit)"⁵⁹⁾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8년 3월 10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카빌라 대통령은 로열티, 세금 및 개발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8년 광업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02년 광업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새로운 광업법은 2002년 광업법에 따라 개발회사에 주어진 10년 동안의 법적, 재무적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광업법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업법이 개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개정 광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⁶⁰⁾ 이런 안정화 조항의 폐지를 통해 광업에 대한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58) Alex Baykitch AM, Robert Edel and Edwina Kwa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et to increase taxes on natural resources and revoke guarantees for mining companies (March 7, 2018) at <<https://www.chinalawinsight.com/2018/03/articles/global-network/democratic-republic-of-congo-set-to-increase-taxes-on-natural-resources-and-revoke-guarantees-for-mining-companies/>>.

59)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초과수익 또는 지대로, 법적으로는 일종의 '부당이득(Windfall Profit)'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60) 2002 Mining Code Article 276 Guarantee of stability

The State guarante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de can only be modified if, and only if, this Code itself is the subject of a legislative amendment adopted by Parliament.

The rights attached to or deriving from an exploration licence or mining exploitation licence granted and valid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such a legislative modification, as well as the rights relating to or deriving from the exploitation licence subsequently granted by virtue of such an exploration licence, including among others, the tax, customs and exchange regimes set forth in this Code, remain acquired and inviolable for a ten-year period from the date of:

- a)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egislative modification for the valid exploitation licences existing as of that date;
- b) the granting of the exploitation licence subsequently granted by virtue of a valid exploration licence existing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legislative mod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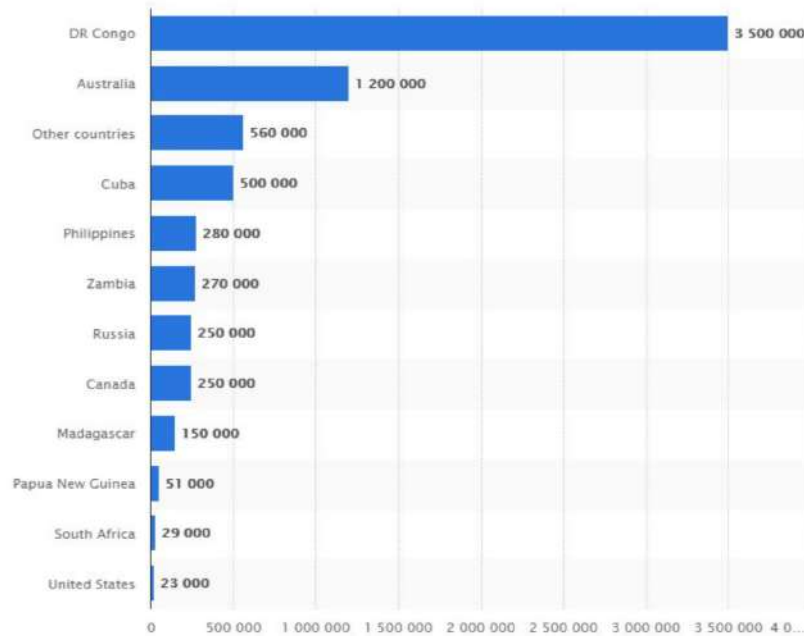
2018년 광업법은 또한 광업 분야의 생산에 대한 국가의 몫이 적다는 점 등 2002년 광업법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광업 부분의 경쟁력, 신속한 투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2002년 광업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안정화 조항, 개발회사에 대한 정부의 낮은 무상지분, 투명성의 결여 등이었다.⁶¹⁾

2018년 광업법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 중, 코발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에서 비롯되었다. 즉, 2018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은 코발트 및 콜탄을 전략광물로 지정했는데, 코발트와 콜탄을 전략광물로 선언함으로써 콩고 민주공화국은 해당 광물에 대해 더 높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⁶²⁾

배터리 제조에서 필수 광물인 코발트 매장량의 47%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으로서는 코발트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국가의 몫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61) Yves Baratte, Mathilde de Brugerolles, A new mining law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arch 16, 2018) at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projects/160318-new-mining-law-for-democratic-republic-of-congo-4fr1ca>>.

62) Nakirfai Tob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eclared cobalt and coltan strategic mineral (March 31, 2018) at <<https://www.iafrikon.com/2018/03/31/the-democratic-republic-of-congo-will-declare-cobalt-a-strategic-mineral/>>.



〈 세계 코발트 매장량 순위 〉

Statista, World cobalt reserves as of 2017, by country (in metric tons)

다만,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2018년 광업법 개정, 특히 코발트를 전략광물로 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Glencore, Randgold 및 China Molybdenum과 같은 개발회사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⁶³⁾ 결국,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2018년 광업법 개정은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와 국가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 2018년 광업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018년 광업법 서문에 나열되어 있는 2002년 광업법의 문제점은 10년의 안정화 조항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조세 및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개발회사에 대한 낮은 정부지분, 담보 및 개발권 양도에 대한 낮은 고정 수수료, 하도급 및 자회사에 대한

63) Africanews, Cobalt to be declared a "strategic" mineral in D.R Congo (March 15, 2018) at <http://www.africanews.com/2018/03/15/cobalt-to-be-declared-a-strategic-mineral-in-the-dr-congo/>.

완화된 규제, 광물 가격의 급등에 따르는 초과 이익의 귀속 주체가 모호한 점, 모델 협정의 부재,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의 부재, 투명성의 부족 및 낮은 비율의 정부에 대한 몫 분배 등이다.⁶⁴⁾

이런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광업법은 광업의 경쟁력, 광업권 부여 절차의 신속성과 합리성 확보, 조세·관세·환전 등을 통한 투자의 유인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⁶⁵⁾

2018년 광업법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채취권 기간의 단축 :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 탐사권 연장의 제한 : 1회에 한해 갱신 가능
- 양도 등록 수수료 신설 : 광업권 양도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등록 수수료 부과, 양도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 시행
- 담보 등록 수수료 확대 : 현재의 균일 수수료 방식에서 담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등록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함
- 로열티 증가
- 특별 로열티 신설 :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전략광물(Strategic Substances)로 지정되는 경우 10%의 추가 로열티를 부과
- 초과 이익에 대한 50% 특별세 부과 : 광물의 시장가격이 금융에서의 타당성 검토에서 사용된 가격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50% 과세
- 안정화조항 폐지
- 국가의 무상 지분 확대 : 기존 5%에서 10%로, 그리고 광업권을 갱신하는 경우 추가 5%
- 자국민 지분 취득 보장 : 개발회사 지분 중 10% 이상을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권자가 보유하도록 함
- 순투자율 확대 : 부채를 통한 금융보다는 최소 40%의 자본 순수유입을 통해 개발하도록 강화

64) Law No. 18/001 of 09 March 2018 amending and supplementing Law No. 007/2002 of 11 July 2002 bearing Mining Code, Reason.

65) Ibid.

- 판매 대금의 회수 범위 확대 : 투자회수기간 동안 판매 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으로의 송금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그 이후는 100%로 확대함
- 채취권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통한 직·간접적 통제 강화
-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대 및 콩고 민주공화국의 인력 및 서비스 활용 강화
- 해당 자회사가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권자의 지분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개발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광업법에 따른 조세 특례 혜택 부여
- 조세 및 관세 부담의 증가
- 자국민 및 자국 내 서비스 이용의무 강화
- 환경책임 강화
- 광업 협약 체결자들에 대한 2018년 광업법의 즉시 적용
- 2018년 광업법 적용에서의 불확실성 : 2018년 광업법이 기존 광업법의 안정화 조항, 기타 권리들을 폐지하고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와, 조세·관세·환전 등에 대한 기존 광업권자의 권리는 5년간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임

다. 2018년 광업법의 구체적 검토

(1) 광업권 기간 및 연장

2002년 광업법에서 탐사권은 5년의 초기 탐사기간과 주요 광물에 대해서는 2년, 기타 광물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각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광업법은 주요 광물과 기타 광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광물에 대해 탐사권은 5년 기간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⁶⁾

2018년 광업법은 채취권 기간에 대해서도 2002년 광업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초기 채취권 30년에 15년 동안 횟수 무제한 갱신이 가능했으나, 초기 채취기간은 25년으로 단축되었고 15년 기간의 채취권 갱신은 인정하고 있으나 채취권자의 신청과 정부의 승인이 전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⁶⁷⁾ 즉, 탐사권 및 채취권에 따른 기간에 대해

66) 2018 Mining Code Article 52 Term of the Exploration License.

67) 2018 Mining Code Article 67 Term of the Exploitation License.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 탐사권 취득을 위한 재정 조건

2002년 광업법에서는 탐사권 신청자로 하여금 초기 탐사기간의 마지막 해에 지불해야 하는 1년간 총 토지 사용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최소재정능력을 요구하였으나, 2018년 광업법은 그 금액을 50배로 확대하고 있다.⁶⁸⁾

(3) 광업권 이전 등록 수수료, 담보권 설정 등록 수수료

2018년 광업법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가격(거래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⁶⁹⁾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전 가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2018년 광업법은 또한, 광업권 담보에 대한 등록에서도 피담보채권의 금액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⁷⁰⁾ 다만 담보권 등록 수수료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역진적으로 정해졌으며, 피담보채권액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 수수료는 프랑스 프랑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화 5억 1달러 이상에서 10억 달러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0.2%,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0.1%에 해당하는 달러화 가치를 프랑으로 납부해야 한다.

(4) 로열티

2002년 광업법은 철광석에 대해서는 0.5%,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2%, 주요 금속에 대해서는 2%, 주요 광석(Precious Stones)에 대해서는 4%,⁷¹⁾ 산업용 광물·고체 석유·기타 특정되지 않는 광물에 대해서는 1%, 건설 자재에 대해서는 0%의 로열티를 부과했다.⁷²⁾ 하지만 2018년 광업법은 철광석 1%, 비철금속 3.5%, 주요 광물 3.5%, 주요 광석

68) 2018 Mining Code Article 58 Proof of Minimum Financial Capacity.

69) 2018 Mining Code Article Article 185b Regis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the Deed of Assignment.

70) 2018 Mining Code Article 171 al. 1st and 3rd

71) 2002 Mining Code Article Definition of Terms - 중간 생략-

38. Precious stones: Precious mineral substances consisting of one or more chemical elements and possessing the special properties which render them a product of high market value. These include: diamond, emerald, ruby, sapphire, chrysoberyl and topaz; - 이하 생략 -

72) 2002 Mining Code Article 241 Rate of mining royalties

6%, 전략광물 10%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⁷³⁾

2018년 광업법에 의해 코발트가 전략광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코발트에 대한 광업권자들의 로열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로열티 조항은 적용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⁷⁴⁾

(5) 초과 이익(Super Profit)에⁷⁵⁾ 대한 과세

2018년 광업법은 광물가격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된 가격의 25% 이상 초과 상승할 때 해당 초과 이익에 대해 50%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⁷⁶⁾ 2018년 광업법이 초과 이익에 대한 개념을 우호적인 시장 조건으로 인해 통상적인 또는 현재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업권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6) 안정화 조항의 폐지

2018년 광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02년 광업법에 있던 10년 기간의 안정화

The mining royalties are 0.5% for iron or ferrous metals, 2% for non-ferrous metals, 2.5% for precious metals, 4% for precious stones, 1% for industrial minerals, solid hydrocarbons and other substances not specifically mentioned, and 0% for standard construction materials.

73) 2018 Mining Code Article 241 Rates of the mining royalty

The rates of the mining royalty are:

- a. 0% for commonly used building materials;
- b. 1% for industrial minerals, solid hydrocarbons and other non-named substances;
- c. 1% for iron and ferrous metals;
- d. 3.5% for non-ferrous and / or basic metals;
- e. 3.5% for precious metals;
- f. 6% for precious and colored stones;
- g. 10% for strategic substances.

The Mining Regulations specify the elements concerned by the classification above.

74) Alex Baykitch AM, Robert Edel and Edwina Kwan, above n 58.

75) 2018 Mining Code Article 1 Definitions - 중간 생략 -

49bis. super profits or excess profits: additional profits beyond current and normal rates of return, and due to particularly favorable market conditions; - 이하 생략 -

76) 2018 Mining Code Article 251 bis Special tax on excess profits

Surplus profits or super profits means the profits made when the prices of materials or commodities experience an exceptional increase, greater than 25% compared to those included in the bankabl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ject. - 이하 생략 -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한편, 2018년 광업법의 효력 발생 현재 유효한 광업권자와 2018년 광업법의 효력 발생일 현재 탐사권을 가지면서 그 이후 채취권을 취득하는 경우, 각 그로부터 5년 동안은 안정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⁷⁾ 향후 안정화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와 광업권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7) 정부 참여 지분의 확대, 콩고 민주공화국 민간 지분 강화

2002년 광업법에서 5%로 정한 무상의 정부 지분이 2018년 광업법에서는 10%로 확대되었다.⁷⁸⁾ 광업권자들로서는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지분을 무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 이전해야 하므로 일종의 국유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18년 광업법은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권자의 지분을 최소 10%로 명시하고 있다.⁷⁹⁾ 이 또한, 2018년 광업법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며,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권자의 최소지분 조항 또한 일종의 국유화 조치로 보인다.

이들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방법, 이행시기 등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8) 지분 출자 범위 확대

2018년 광업법은 개발·건설 등 광업 운영행위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 40% 이상을 참가자들의 직접 지분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⁸⁰⁾ 그리고 지분 출자에 대한 증거를

77) 2018 Mining Code Article 276 para. 2

The State assures to the holder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e present law, the guarantee of stability of the fiscal, customs and foreign exchange regime which remains acquired and intangible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de for valid mining rights existing on that date;

b. the granting of the mining exploitation right subsequently acquired under a valid Exploration License existing on the dat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ct.

78) 2018 Mining Code Article 71 litteras b, c, d, e, f, g and h - 중간 생략 -

d. surrender to the State 10% of the shares or shares constituting the share capital of the applicant company. These parts are free of all charges and undiluted; - 이하 생략 -

79) 2018 Mining Code Article 71 bis Participation of natural persons of Congolese nationality in the capital stock.

탐사권 신청 초기 단계에 제출해야 한다.

광업권자들로서는 부채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개발비를 직접 지분 출자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

(9) 판매 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송금 범위

2002년 광업법에서는 투자비 회수기간 중, 생산물을 판매한 대금의 40%를 콩고 민주공화국 내의 구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⁸¹⁾ 하지만 2018년 광업법은 그 범위를 60%로 확대했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100%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 개설된 구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다.⁸²⁾

(10) 정부 통제의 강화

2018년 광업법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광물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체의 지분 이전에 대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⁸³⁾ 또한, 주무 장관으로 하여금 생산물 판매 대금에 대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의 송금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⁸⁴⁾

(11) 지방정부 통제권 강화 및 지역 공동체 개발 책임

2018년 광업법은 지방정부의 광업 담당기관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광업행위에

80) 2018 Mining Code Article 71 litteras b, c, d, e, f, g and h - 중간 생략 -

b.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 according to a financing plan for th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mine as well as the site rehabilitation plan at its closure. This plan specifies each type of financing, the funding sources targeted and the justifications for their probable availability. In all cases, the share capital contributed by the applicant may not be less than 40% of the said resources; - 이하 생략 -

81) 2002 Mining Code Article 269 Repatriation of receipts from exports.

82) 2018 Mining Code Article 269 para. 1st, 2nd and 3rd.

83) 2018 Mining Code Article 276 bis Transfer of Shares.

84) 2018 Mining Code Article 271 para. 3, 4 and 5 - 중간 생략 -

The Mining Directorat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exercising control over the holders of the mining exploitation rights and the exploitation quarry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compulsory repatriation of export earnings. - 이하 생략 -

대한 통제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⁸⁵⁾ 2002년 광업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비산업적 광업권자에 대한 거래 카드의 발급, 공유지에서 공기업에 의한 채석행위 승인에 대한 권한, 일반 건설 자재에 대한 탐사 및 채취권 부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이었다.⁸⁶⁾

2018년 광업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광업행위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광업권자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이중적 감독을 받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2018년 광업법은 광업권자들로 하여금 회사가 설립된 당해 연도 총매출액의 0.3% 이상을 지역공동체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⁸⁷⁾

(12) 생산 광물에 대한 국내 처리의 원칙

2018년 광업법은 생산 광물에 대한 국내 처리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⁸⁸⁾ 이에 따르면 광업권자들은 3년 이내에 생산 광물의 국내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광업권자들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 처리시설의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1년 동안 국외 처리가 가능하지만,⁸⁹⁾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산 광물의 국내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물 산업의 수직계열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85) 2018 Mining Code Article 11 ter Head of Provincial Mines Di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and without prejudice to other prerogatives assigned to him by the organic officer of the Ministry of Mines, the Chief of Provincial Mines Division is competent to:

at. control and monitor mining activities in the provinces; - 이하 생략 -

86) 2002 Mining Code Article 11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and the Head of the Provincial Authority of Mines.

87) 2018 Mining Code Article 258 bis Staffing for contribu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88) 2018 Mining Code Article 108 bis The obligation of the holder to carry out the treatment of mineral substances in the National Territory, Article 342 ter: The time limit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cessing and processing oblig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or the current holders of mining rights.

89) 2018 Mining Code Article 108b Exceptional treatment of raw mineral substances outside the national territory.

(13) 자국 인력과 서비스의 활용

2018년 광업법은 서문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시민권자로 하여금 광업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자재 등의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광업법은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권자 이외의 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⁹⁰⁾

(14) 환경책임의 강화

2018년 광업법은 환경에 대한 광업권자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광업권자의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것이다.⁹¹⁾ 또한 환경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15) 중재

2002년 광업법에도 중재 조항이 있었으며,⁹²⁾ 중재는 국내 중재와⁹³⁾ 국제 중재로⁹⁴⁾ 구분되어 있다. 국내 중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들은 국제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중재와 관련하여 2018년 광업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일정한 투자자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90) 2018 Mining Code Article 246 bis Professional tax on the supply of services

The holder is liable for the professional tax on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sums paid as remuneration for services of any kind rendered to him by natural or legal persons, not establishe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t the rate of 14%.

91) 2018 Mining Code Article 285 bis Industrial responsibility of the holder

Any holder of a mining right and / or quarry is liable for damage to people, to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because of its mining activities, even in the absence of any fault or negligence. He is obliged to repair them. - 이하 생략 -

92) 2002 Mining Code Article 317 Arbitration,

93) 2002 Mining Code Article 318 Domestic arbitration.

94) 2002 Mining Code Article 319 International arbitration

하고 있다.

또한, 광업허가의 수령과 동시에 광업권자들은 중재 합의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라.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의 Dodd-Frank법

2010년 7월, 미국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콩고 동부(킨샤사)의 군사 작전에 광물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Dodd-Frank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⁹⁵⁾

Dodd Frank법은 분쟁지역 광물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발급을 의무화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의 수입기업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님을 증명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광물은 탄탈류, 콜탄, 주석, 텅스텐, 금 등이다.⁹⁶⁾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2014년 4월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은 Dodd-Frank법의 1502항에 따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⁹⁷⁾ 다만,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한 생산품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했다.⁹⁸⁾

2018년 5월 22일 기존 Dodd-Frank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약 54조원)에서 2500억 달러(약 270조원)로 완화했을 뿐,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았다.⁹⁹⁾

95) Thomas R. Yager, above n 12, 13.1.

96) 홍성국, 'DR콩고에 미치는 Dodd-Frank법의 여파',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년 4월 28일, 홈페이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319>>.

97) Thomas R. Yager, above n 12, 13.1.

98) Ibid.

99) NEWSIS, '도드-프랭크법' 완화 법안 미 하원 통과, 2018년 5월 23일, 홈페이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3_0000315923&cID=10101&pID=10100>.

IV. 결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로 인해 코발트 등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감지한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보유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은 최근 광업법 개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최근에 콩고 민주공화국 외에도 탄자니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한 광업법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볼 때,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업법 개정은 단지 콩고 민주공화국만의 변화가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에 따라 자원보유국의 중요한 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2018년 개정 광업법에서 드러난 쟁점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통제 강화, 국가 또는 자국민 지분 비율의 확대, 세금 및 로열티 증가,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정리될 수 있다.

배터리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등 다양한 광물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 논문이 이런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국내

김대중, 'DR 콩고 광물자원 투자환경 및 법제연구', 2011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 논문집, 2011년.

외교부, 2018 주요국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2018년 1월.

한겨레, 콩고 대선, 한국 기업 터치시스템 도입으로 혼란 우려, 2018년 8월 16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896.html#csidxa9d62eb7a3fab1baa31354ec4e5e38a>>.

홍성국, 'DR콩고에 미치는 Dodd-Frank법의 여파',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년 4월 28일, 홈페이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8319>>.

KOTRA, 콩고 민주공화국 - 국가·지역정보, 2018년 8월 10일,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2>>.

NEWSIS, '도드-프랭크법' 완화 법안 미 하원 통과, 2018년 5월 23일, 홈페이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3_0000315923&cID=10101&pID=10100>.

해외

USGS, 2014 Minerals Yearbook Congo(Kinshasa) (July 2017).

Africanews, Cobalt to be declared a "strategic" mineral in D.R Congo (March 15, 2018) at <<http://www.africanews.com/2018/03/15/cobalt-to-be-declared-a-strategic-mineral-in-the-dr-congo/>>.

Alex Baykitch AM, Robert Edel and Edwina Kwa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et to increase taxes on natural resources and revoke guarantees for mining companies (March 7, 2018) at <<https://www.chinalawinsight.com/2018/03/articles/global-network/democratic-republic-of-congo-set-to-increase-taxes-on-natural-resources-and-revoke-guarantees-for-mining-companies/>>.

CIA, the World Factbook,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September 10, 2018) at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g.html>>.

European Investment Bank, Tenke Fungurume Mining projec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August 2, 2018), at <<https://web.archive.org/web/20090309160826/http://www.eib.org/projects/news/tenke-fungurume-mining-project,-democratic-republic-of-congo-drc.htm>>.

Nakirfai Tob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eclared cobalt and coltan strategic mineral (March 31, 2018) at <<https://www.iafrikan.com/2018/03/31/the-democratic-republic-of-congo-will-declare-cobalt-a-strategic-mineral/>>.

Thomas R. Yager, 'The Mineral Industry of Congo (Kinshasa)', 2014 Minerals Yearbook (USGS)

Yves Baratte, Mathilde de Brugerolles, A new mining law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arch 16, 2018) at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projects/160318-new-mining-law-for-democratic-republic-of-congo-4fr1ca>>.